

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

1. 심질환으로 치료중인 환자 보호자
2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

| 구 분 | 설 명 |
|---|---|
| 구 급 차 등 의 운 전 자 | 다음의 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등의 운전자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. 의료기관 다.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라. 민간이송업자 및 타 법에 의하여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|
|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 동 차 의 운 전 자 | 다음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가. 시내외, 농어촌 및 마을버스 나. 전세버스 다. 특수여객자동차(장레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) 라. 일반개인택시 |
| 보 건 교 사 | 초·중·고등학교 보건교사 |
| 도 로 교 통 업 무 에 종 사 하 는 경 찰 공 무 원 | 가. 교통경찰공무원 나. 의무경찰 |
| 산 업 체 안 전 관 리 책 임 자 등 | 가. 산업체 관리책임자 나. 안전관리자 다. 보건관리자 라.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|
| 체 육 시 설 의 의 료· 구 호 또 는 안 전 업 무 종 사 자 | 다음 시설의 안전관리요원 가. 전문체육시설 나. 등록 체육시설업 :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 경주장업 다. 신고 체육시설업 :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업, 승마장업, 종합체육시설업, 수영장업 등 |
| 유 선 및 도 선 인 명 구 조 요 원 | 인명 구조요원 |
| 관 광 사 업 종 사 자 중 의 료 구 호 또 는 안 전 업 무 종 사 자 | 다음의 시설의 의료·구호 및 안전관리자 가. 관광숙박업 나. 관광객이용시설업 다. 국제회의업 라. 카지노업 마. 유원시설업 |
| 항 공 종 사 자 또 는 객 실 승 무 원 철 도 종 사 자 선 원 | 의 료 · 구 호 또 는 안 전 에 관 한 업 무 에 종 사 하 는 자 |
| 소 방 안 전 관 리 자 |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소방안전관리자 |
| 체 육 지 도 자 |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|

3.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